

## [별표 2의2] 환급금 계산 내역표 (조건표) 작성요령

### I 개요

- 수출신고한 물품과 원재료간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식

### II 작성방법

- 「수출신고번호-란-규격」 영역 안의 (상세)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작성
- 회사 내 자재관리시스템(ERP) 등으로 소요량 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이 환급신청서 및 제증명서 보다 상세하게 관리하는 경우, ERP 등의 상세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서식을 작성할 수 있음.
  - ☞ 예: 환급신청서상 물품식별번호는 'P'이나 회사 내 자재관리시스템(ERP)상 소요량 관리수준이 'P'의 하위인 'p1', 'p2'라면, 'P'를 물품식별번호로, 'p1'과 'p2'를 상세물품식별번호로 작성
- 상세물품식별번호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란을 추가후 작성할 수 있음

### III 항목별 기재요령

#### 가. 물품 사항

- ① **관련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(연번):**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해당 문서번호 및 해당 요구 건의 연번을 기재
- ② **제출번호 및 제출일자:** 제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한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기재 [제출번호: 신고인부호(5)-연도(2)-일련번호(6)]
- ③ **관련 신청건(접수번호) 및 신청구분:**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해당 환급신청 및 제증명의 접수번호를 기재 (신청구분으로 환급신청 및 기납증 구분)
- ④ **제출자:** ③의 신청건의 제출자를 기재
- ⑤ **관세사:**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 정보를 기재
- ⑥ **[XXXX]란/총[XXXX]수:** 앞쪽 대괄호에는 상세물품식별번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, 뒤쪽 대괄호에는

총 일련번호를 기재

- ⑦ 수출증빙번호(수출신고서-란-규격 등): 조건표 제출영역이 되는 수출증빙번호(수출신고번호-란-규격  
까지 기재)
- ⑧ 물품식별번호: 환급신청서 수출물품(을) 또는 기납증 양도물품(을)에 기재한 식별번호
- ⑨ 상세물품식별번호: 회사 자재관리시스템(ERP)에서 관리하는 물품식별번호로서, ⑧물품식별번호와  
동일한 경우 같은 값을 기재하며, ⑧과 상이한 경우 해당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(⑥의 란수 증가의  
기준이 됨)
- ⑩ 품명: ⑨상세물품식별번호의 품명을 기재
- ⑪ 생산물량(단위): ⑨상세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생산수량 및 단위를 기재

**나. 원재료 사항**

- ㉠ 연번: 행 일련번호
- ㉡ 원재료식별번호: 상세물품식별번호(⑨)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  
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 
(업체에 따라 파트번호, 자재번호, 물품식별번호,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, 모델규격 번호  
도 가능)
- ㉢ (원재료구분) 신고(접수)번호-란-규격: 원재료식별번호(㉡)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  
고필증(제증명)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
  - 원재료구분: 수출물품 또는 양도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

원재료구분 부호	증빙 서류
00	수입신고필증
02	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
03	평균세액증명서
04	분할증명서
05	부산물

- 신고번호: 사용한 원재료별로 해당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, 부산물이 원  
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 관리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  
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
- 란번호: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,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

'001'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'003'으로 기재

- **규격번호:**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번호인 경우에는 규격번호를, 제증명의 경우에는 '양도물품'(을) 또는 '증명물품'(을)의 ㉠연번을,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(정) ㉠연번을 기재

㉠ **수입(매입)일자:** 수입신고필증(증명서)상의 신고수리(매입)일자를 기재

- **분종:** 최초 발생일
- **기납증:** 기납증의 양도(매입)일자
- **평세증:** 발급받은 수입(매입)월의 첫날
- **부산물:** 부산물(정)을 발생시킨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접수일자

㉡ **사용물량(단위):**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물량을 기재하며, 단위는 원재료증빙번호(㉢)의 규격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단위(단위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한 단위)를 기재, ㉢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

㉣ **세액합계:**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(양도) 세액의 합계를 기재

㉤ **공제비율 :** 해당원재료의 지급제한비율 또는 부산물공제 비율을 기재

- 지급제한비율이 18.57% 일 경우: A - 18.57
-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.12% 일 경우: B - 26.12
-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 구분값: C - 26.12